

##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특약

### 제1조 적용범위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 기본약관』과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및 개별 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2조 예금과목

이 예금은 보통예금, 저축예금 및 MMDA로 합니다.

### 제3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 제4조 상품명

이 예금의 상품명은 “하나멤버스 주거래통장” 또는 “119생명지킴이 통장Ⅱ” 중에서 고객이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119생명지킴이 통장Ⅱ” 는 2017년 2월 15일부터 선택 가능합니다.

### 제5조 이자지급

-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예금의 종류별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 (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합니다.
  - 1. 보통예금: 매년6월, 12월의 제3금요일    2. 저축예금 및 MMDA: 매년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 ② 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영업일에 영업점에 게시하는 금리로 계산합니다.

### 제6조 주거래손님 우대서비스

- ① 은행은 아래의 필수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충족될 다음달에 수수료 우대서비스 I 을 횡수 제한 없이 제공하고, 수수료 우대서비스Ⅱ를 총합 월5회 제공합니다. 단, 신규 가입월 및 가입 익월에는 요건 충족에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I 만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

(필수요건) 이 예금으로 매월 예금가입자가 지정한 날에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또는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이체<sup>(주1)</sup> 시

(주1) 급여이체 인정기준	
인정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원화계정)에 입금시 아래사항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가 포함된 경우 (적요: 급여, 월급, 봉급, 연봉, 급료, 상여, 성과, 보너스, 월보수, SALARY, PAY, BONUS)</li> <li>- 급여일 ± 1영업일에 급여 이체 시 (급여일 사전 등록)</li> </ul> </li> </ul>
금액	● 최소 건당 50만원

제외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채널의 거래를 인정하되, 다음의 경우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창구직원에 의한 단말거래 (단, 창구거래중 급여 다건입금은 인정)</li> <li>- 자동화기기를 통한 거래 (단, 타인에 대한 '이체'거래는 인정)</li> </ul> </li> <li>● 가맹점대금, 대출연동, 타발송금 등 금융거래에 수반되는 거래는 제외</li> <li>● 본인거래로 추정되는 거래 제외 (예시: 예금주명 적요)</li> </ul>
----------	--

(수수료 우대서비스 I)

1.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2.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3. 인터넷뱅킹, 폰뱅킹(ARS),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4.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면제
5. 통장 재발행 수수료 면제

(수수료 우대서비스 II)

1. 창구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2.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 수수료 면제

(타행은 CD기 공동망 참여하는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타행 제휴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② 은행은 제1항의 필수요건 충족 고객이 아래의 추가요건 중 1건 이상 충족하는 경우,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충족될 다음달에 수수료 우대서비스 I 을 횡수 제한 없이 제공하고, 수수료 우대서비스 II 를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 단, 신규 가입월 및 가입 익월에는 요건 충족에 관계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I 만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

(추가요건)

1. 이 예금에서 하나카드사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월 30만원 이상 결제 시
2. 이 예금에서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시

### 제7조 하나멤버스 회원 우대서비스

- ① 제6조의 주거래손님 우대서비스 대상이 아닌 고객이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멤버스 회원인 경우,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충족될 다음달에 제6조 제1항의 수수료 우대서비스 I 을 총합 월 10회 제공하며<sup>(주2)</sup>, 하나멤버스 회원이면서 추가로 아래 특별요건 중 1건 이상 충족하는 경우에는 충족될 다음달에 수수료 우대서비스 I 을 총합 월 20회 제공하고 수수료 우대서비스 II 를 총합 월 5회 제공합니다.<sup>(주3)</sup>

(주2) 전월 말부터 거래시점 현재까지 하나멤버스 회원을 유지하는 경우 제공

(주3) '16.12.26 이전 가입한 계좌에 대해서는, '17.1월 중 특별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여 '17.2월부터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

(특별요건)

1. 이 예금에서 하나카드사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 시
2. 이 예금에서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시
3. 이 예금에서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 시

4. 이 예금에서 휴대폰요금 자동이체 시
5. 이 예금의 평균 잔액이 50만원 이상 시